# 학사행정/제 2 장 학생행정 장애학생지원규정

(제정 2003.9.1., 최종개정일 2023.12.1.)

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, 교육, 학내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(변경 2011.7.1)

### 제 2 장 장애학생 지원조직 및 차별금지(장명변경 2011.7.1)

- 제2조의 2(조직) (신설 2011.7.1) ①장애학생의 교육·생활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.
  - ②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지원업무는 따로 정한다.
- 제3조(장애학생 차별금지) ①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- ②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의 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(변경 2011.7.1)

# 제 3 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

- 제4조(원칙) 장애학생에게 교육, 수업,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제5조(수강신청)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장학금 지급) 장애학생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**제7조(도서관 이용)**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다.
  - 1.장애학생 전용 열람석
  - 2.장애학생 전용 사물함
  - 3.도서대출기간의 연장적용
  - 4.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

- **제8조(장애학생 상담)** ①장애학생의 교수, 학습,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  - ②장애학생의 요청 시, 소속학과(전공)에서는 장애학생의 수강신청, 학습, 기타활동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할 전담지도교수를 지정한다.(신설 2019.7.1.)
  - ③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항번호 변경 2019.7.1.)
- 제9조(도우미 제도 운영) ①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.
  - 1.학습 도우미
  - 2.이동보조 도우미
  - 3.도서관 도우미
  - 4.생활관 도우미(변경 2004.3.2)
  - ②도우미에게는 봉사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- 제10조(교육 기자재 보유)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.
- **제11조(생활관 이용)** ①장애학생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.(변경 2004.3.2)
  - ②장애학생의 생활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(변경 2004.3.2.)
- 제12조(전용시설)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  - 1.장애학생 전용 주차장
  - 2.장애학생 전용 화장실
  - 3.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
#### 제 4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장명변경 2011.7.1)

- 제13조(구성) ①장애학생 지원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변경 2011.7.1)
  -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(변경 2004.3.2, 2005.8.1, 2006.1.5, 2010.3.1., 2011.7.1., 2015.3.1., 2021.6.1., 2022.3.1., 2023.12.1.)
  -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인원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(항신설 2023.12.1.)
  - 1.우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
  - 2.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
  - 3.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  - ④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, 회의를 통할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(항번호 변경 2023.12.1.)

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장애학생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- 2.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
- 3.기타 위원장이 발의한 사항
- 제15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6조(주관 등)** 회의는 자연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, 간사는 자연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(변경 2006.1.5, 2008.3.1, 2010.3.1, 2011.7.1)

### 제 5 장 보 칙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.

	부	칙
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	부	칙
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	부	칙
이 규정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		<b>-</b> 1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, ,, 02 2000 2 92 72 7 7 7 8 2 7.	부	칙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·	·
	부	칙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	부	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ы	د.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ㅠ정은 2019년 7월 1월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	1	٦
	부	칙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	부	칙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	<b>-</b> .	